

# 이행 안내

# FTA 20

Series 3

選

한-중 FTA 篇



관세청  
KOREA CUSTOMS SERVICE



## SECTION 1

## 원산지증명서 발급

01

p.07

동일물품에 대하여 한-중 FTA와  
APTA 원산지증명서 동시 발급 가능 여부

02

p.08

1건의 수출신고에 대하여 한-중 FTA와  
APTA 원산지증명서 동시 발급가능 여부

03

p.09

원산지증명서 작성시 물품 및 연번 기재방법

04

p.11

원산지증명서 1란에 다수의 모델 · 규격을  
기재할 수 있는지 여부

05

p.12

한-중 FTA 원산지포괄증명

06

p.13

중국해관에서 우리나라 발급 원산지증명서의  
HS코드 정정 요구시 처리방법

07

p.14

제3국 송장 발행시 원산지증명서 유효성 여부

08

p.15

출입검검험검역국에서 발급된 원산지증명서 유효성

09

p.16

수출 대행인 명의로 발급된 원산지증명서의 유효성



## SECTION 2 직접운송

### 10 p.17

한-중 FTA 직접운송 인정요건

### 11 p.18

비당사국을 경유하는 경우 직접운송 입증서류

### 12 p.19

원산지증명서에 “비가공증명 인장”을  
날인한 경우 유효성

### 13 p.20

홍콩세관의 비가공증명서 발급절차

### 14 p.21

홍콩 경유화물에 대한 재화청단(清單) 인정 여부



## SECTION 3 협정관세의 적용

### 15 p.22

수입신고시 원산지증명서 원본 제출 여부

### 16 p.23

원산지증명서의 원산지결정기준 표기

### 17 p.24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받는 경우  
수입신고시 의사표시 여부

### 18 p.26

한-중 FTA 발효일 전에 공급한 물품에 대한  
원산지확인서 발급 여부

### 19 p.26

임가공 물품에 대한 한-중 FTA 협정관세 적용 여부

### 20 p.27

20 1개의 B/L로 반입된 물품을 수입신고 란별로  
한-중 FTA와 APTA 협정세율 적용가능 여부



## 동일물품에 대하여 한-중 FTA와 APTA 원산지증명서 동시 발급 가능 여부

- ▶ 동일한 물품이라도 협정이 다른 경우 각 협정별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음
- ▶ 다만, 수입국에서 협정관세를 적용 받고자 할 때에는 하나의 원산지증명서를 선택하여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해야 함
  - 한-중 FTA 협정관세는 다른 쪽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에 대하여 적용하고, 협정관세를 신청할 때에는 원산지증명서를 소지해야 함
  - APTA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원산지증명서로 해당 상품의 원산지를 입증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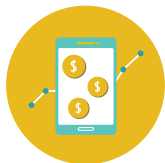
### 관련 규정

- 한-중 FTA 제2.4조[관세 인하 또는 철폐]
  1. 이 협정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각 당사국은 부속서 2-가의 자국 양허표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에 대한 자국의 관세를 점진적으로 인하하거나 철폐한다.
- 한-중 FTA 제3.17조[특혜관세대우의 신청]
 

나. "가"호에 언급된 수입세관 신고시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를 소지한다.
- APTA 부속서 II 제7조[원산지증명서]
 

특혜양허를 받고자 하는 상품은 수출 참가국 정부에 의해 지정된 기관에 의해 발행되고, 첨부된 원산지증명서 견본 및 원산지증명서 작성요령에 따라 다른 참가국에게 통보된 원산지증명서에 의해 입증되어야 한다.

## 02



## 1건의 수출신고에 대하여 한-중 FTA와 APTA 원산지증명서 동시 발급 가능 여부

- ▶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신고를 기준으로 작성·서명
  - ※ 수출신고서는 품목번호 또는 품목별로 별도의 「란」으로 구분하여 기재함
- ▶ 따라서, 수출신고서의 「란」별로 구분하여 한-중 FTA와 APTA 원산지증명서를 신청·발급할 수 있음

### 관련 규정

- FTA 관세특례법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조(원산지증명서 작성방법)  
원산지증명서는 협정에서 다르게 규정하지 않았다면 수출신고 기준으로 발급 또는 작성·서명하여야 한다.



## 원산지증명서 작성시 물품 및 연번 기재방법

- ▶ 상품 송장의 모델·규격별로 각 란에 상품명세를 상세히 기재하여 작성
- ▶ 20란을 초과하는 경우 새로운 원산지증명서 발급

### 관련규정

-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작성요령

제6란: 물품의 연번을 기재하며, 물품의 연번은 20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8란: 포장의 수량 및 종류를 명시한다. 각 상품의 물품명세를 제공한다. 물품명세는 그 상품을 검사하는 세관 공무원이 상품을 식별할 수 있고, 그 상품을 송장 물품명세 및 상품의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의 물품명세와 연계할 수 있도록 충분히 자세하게 기재되어야 한다. 상품이 포장되지 아니한 경우, "IN BULK"를 기재한다.

## 04



## 원산지증명서 1란에 다수의 모델·규격을 기재할 수 있는지 여부

- ▶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는 최대 20란을 초과할 수 없음
  - HS코드가 같더라도 모델·규격이 다른 경우 란을 달리하여 작성해야 함
- ▶ 또한 1란에 20개의 모델·규격을 기재할 수 있으나,  
하나의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되는 모델·규격별 전체 품목의 수는  
20개를 초과할 수 없음
  - ※ 2란 이하 작성 불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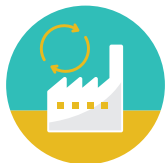
## 한-중 FTA 원산지포괄증명

- ▶ 한-중 FTA에서 원산지포괄증명은 인정되지 않음
- ▶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는 해당 상품의 선적전 또는 선적시 또는 선적일부터 7근무일 이내에 발급될 것을 규정함

### 관련규정

- FTA 관세특례법 시행규칙 제2조(정의)  
원산지포괄증명은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선적되거나 수입신고되는 동종동질의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 또는 작성일부터 12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최초의 원산지증명서를 반복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함
- 한-중 FTA 제3.15조(원산지증명서) 제3항

## 06



## 중국해관에서 우리나라에서 발급한 원산지증명서의 HS코드 정정 요구시 처리방법

- ▶ 원산지증명서 9번란에는 협정관세적용대상이 되는 물품의 HS6단위를 기재함
- ▶ HS 6단위는 전세계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각국의 해석상이에 따라 국가별로 다르게 분류하는 사례가 있으며 다음의 경우에 정정해 주고 있음
  - 중국해관의 사전심사서 등 공식적인 문서로 수정할 HS코드가 확인이 되고
  - 동 HS코드로 분류하더라도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할 경우
- ▶ 상기사료를 첨부하여 원산지증명서의 HS코드를 정정요청

### 관련 규정

- 품목분류상이시 처리지침(FTA집행기획담당관-760, 2014.4.1.)
  - 우리나라와 협정상대국과의 HS번호 상이시 원산지증명서 발급요령
    - \* FTA 특혜원산지증명서 발급시에 우리나라와 수입국간 품목분류가 달리 운영되고 있는 경우 수입신고필증 등 수입국의 HS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서류를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관세청 또는 상공회의소)에 제출하면 수입국의 HS번호를 기재하여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의 경우(미국, EU 등)에도 동 원칙이 적용되어 HS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갖춘 경우 사후검증이 실시되더라도 허위 원산지증명서 작성 등에 대한 벌칙이 적용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3국 송장 발행시 원산지증명서의 유효성 여부

- ▶ 송장(INVOICE)이 제3국(비당사국)에서 발급되었더라도 원산지증명서가 협정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유효함
- ▶ 다만, 이 경우 원산지증명서 5번란에 비당사국 운영인의 법적이름을 기재해야 함

### 관련규정

- 한-중 FTA 제3.15조(원산지증명서)
  1. 부속서 3-다에 규정된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책임하에 그의 권한을 부여받은 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해당 상품이 이 장의 요건을 충족한다는 조건 하에 국내법률에 따라 수출 당사국의 권한있는 기관에 의해 발급된다.

## 08



## 출입경검험검역국에서 발급된 원산지 증명서의 유효성

### ▶ 한-중 FTA 중국측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 중국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임

### ▶ 출입경검험검역국은 중국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소속의 지역기구이므로 출입경검험검역국에서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도 유효함

### ▶ 다만, 협정상 발급기관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기 전에 각 기관의 명칭, 인장 견본 등을 계약상대국에 세관당국에 통보할 의무가 있으므로 통보된 지역기관인지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 관련 규정

- 한-중 FTA 제3.16조(권한있는 기관)
  1. 각 당사국은 권한있는 기관이 증명서를 발급하기 전에 다른 쪽 당사국의 세관당국에 권한있는 각 기관의 명칭과 관련 접촉선의 세부사항을 통보하고, 권한있는 각 기관이 사용하는 관련 양식 및 문서에 대한 모든 인장 견본의 세부사항을 제공한다.
- FTA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의12(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 등)



## 수출대행인 명의로 발급된 원산지증명서의 유효성

### ▶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자

- 수출자
- 생산자
- 수출자의 책임하에 그의 권한을 부여받은 대리인

### ▶ 따라서, 원산지증명서 수출자 란에는 수출대행인이 아닌 중국내에 소재하는 수출자가 기재되어야 하며, 원산지증명서 13번란에도 수출자가 서명을 하여야 함

- 다만, 수출자란에 수출자와 수출대행인을 병기하고 13번란에 수출자가 서명할 경우에는 인정해 주고 있음

※ 2016.1월 중국측에 동 사항에 대하여 협정에 부합하는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요청한 상태이며, 별도 지침이 시달되기 전까지는 수출자란에 수출자와 수출대행인을 병기하고, 13번란에 수출자가 서명을 하는 경우 원산지증명서를 인정함

### 관련규정

- 한-중 FTA 제3.15조(원산지증명서)
  1. 부여받은 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해당 상품이 이 장의 요건을 충족한다는 조건 하에 국내법률에 따라 수출 당사국의 권한있는 기관에 의해 발급된다.



## 한-중 FTA 직접운송 인정요건

- ▶ 한-중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원산지상품은 당사국간 직접 운송되어야 함
- ▶ 다만, 동 상품이 비당사국을 경유하는 경우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직접운송으로 간주함
  - 가. 지리적 이유 또는 전적으로 운송상의 이유로 경유할 것
  - 나. 비당사국에서 거래 또는 소비되지 않을 것
  - 다. 해당 상품이 비당사국에서 하역, 운송상의 이유로 한 화물의 분리 또는 그 상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그 밖의 모든 공정 외의 공정을 거치지 않을 것

### 관련 규정

- 한-중 FTA 제3.14조(직접운송)



## 비당사국을 경유하는 경우 직접운송 입증서류

### ▶ 원산지상품이 비당사국을 경유하는 경우 아래의 서류를 수입신고시 세관에 제출

| 통과 또는 환적의 경우                                                                                                                           | 컨테이너 보관 또는 적출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항공화물운송장</li> <li>• 선하증권 또는</li> <li>• 수출당사국에서 수입당사국까지의 전체 운송 경로가 포함된 복합운송이나 합병운송서류</li> </ul> | 좌동                 |
|                                                                                                                                        | 비당사국 세관당국이 보충하는 서류 |

※ 복합운송(Multimodal Transport) 또는 합병운송서류(Combined Transport Document) : 육상·해상·항공 중 2가지 이상의 형태를 복합하여 운송될 때 발행되는 운송서류

### ▶ 이 때, 비당사국 세관당국이 제공하는 보충서류는 아래와 같음

1. (중국 → 홍콩 → 한국) 홍콩세관 발행 비가공증명서
2. (한국 → 홍콩 → 중국) 홍콩세관 또는 China Inspection에서 발행하는 비가공증명서

#### 관련규정

- 한-중 FTA 제3.14조(직접운송)



## 원산지증명서에 “비가공증명 인장”을 날인한 경우 유효성

- ▶ 중국으로부터 홍콩을 경유하여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화물에 대한 비가공증명서는 홍콩세관에서 발급하며 별도의 서류인 비가공증명서를 교부함
- ▶ 따라서 아래와 같이 원산지증명서에 “비가공 증명”인장이 날인된 것은 유효한 비가공증명서로 볼 수 없음
  - ※ “비가공 증명”인장에 날인된 “China Inspection”은 우리나라로부터 홍콩을 경유하여 중국으로 수입되는 화물에 대한 비가공증명서 발급기관임

|                         |                                                                                             |                                                                                       |                             |                      |                                                                                         |                                |
|-------------------------|---------------------------------------------------------------------------------------------|---------------------------------------------------------------------------------------|-----------------------------|----------------------|-----------------------------------------------------------------------------------------|--------------------------------|
| 6. Item number (Max 20) | 7. Marks and Numbers on packages                                                            | 8. Number and kind of packages; description of goods                                  | 9. HS code (Six-digit code) | 10. Origin criterion | 11. Gross weight, quantity (Quantity Unit) or other measure (Mts, m <sup>3</sup> , etc) | 12. Number and date of Invoice |
|                         | BOR, BUNC (IN VIA )<br>ANY PORT, KOREA<br>ORDER NO. 1500<br>CAND. FT. FID.<br>MADE IN CHINA | ORDER NO. 1500<br>BY-152 TIMES<br><br>TOTAL FIFTY (50) CINS ONLY<br>한국-중국-홍콩-한국-한국-중국 | 9105.90                     | 7284                 | 15500KG                                                                                 | C-1040254<br>DEC. 23, 2015     |

THIS IS TO CERTIFY THAT THE GOODS SHIPPED IN THIS CERTIFICATE HAVE NOT BEEN SUBJECT TO ANY PROCESSING DURING THEIR TRANSIT IN HONG KONG.

SIGNATURE: *[Signature]*  
DATE: 05 JAN 2016

HONG KONG  
CHINA INSPECTION

|                                                                                                                                                                                                                                                                                                                                                                                                                                                                                                                                                                                                                                                                             |  |
|-----------------------------------------------------------------------------------------------------------------------------------------------------------------------------------------------------------------------------------------------------------------------------------------------------------------------------------------------------------------------------------------------------------------------------------------------------------------------------------------------------------------------------------------------------------------------------------------------------------------------------------------------------------------------------|--|
| <br>HONG KONG CUSTOMS AND EXCISE<br>OFFICE OF THE COMMISSIONER<br>CUSTOMS AND EXCISE DEPARTMENT                                                                                                                                                                                                                                                                                                                                                                                                                                                                                                                                                                             |  |
| 1. Name of the Importer/Exporter<br>2. Name of the Consignee<br>3. Name of the Shipper<br>4. Name of the Carrier<br>5. Name of the Agent<br>6. Name of the Broker<br>7. Name of the Freight Forwarder<br>8. Name of the Insurance Company<br>9. Name of the Bank<br>10. Name of the Insurance Broker<br>11. Name of the Insurance Agent<br>12. Name of the Insurance Company<br>13. Name of the Insurance Broker<br>14. Name of the Insurance Agent<br>15. Name of the Insurance Company<br>16. Name of the Insurance Broker<br>17. Name of the Insurance Agent<br>18. Name of the Insurance Company<br>19. Name of the Insurance Broker<br>20. Name of the Insurance Agent |  |



## 홍콩세관의 비가공증명서 발급절차

▶ 홍콩세관으로부터 비가공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아래의 서류를 갖추어 해당 화물이 홍콩에 도착하기 하루 전까지 신청하고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함

- 제출서류

- a. 신청인의 사업등록증
- b. 통과선하증권(필요시)
- c. 원산지증명서
- d. 화물명세서(벌크화물, 화물통합, 컨테이너 적출입 화물)
- e. 화주(貨主)위임장(필요시)
- f. 홍콩 경유(환적)기간 동안의 보관기록(한국행 환적화물에 한함)
- g. 기타 화물적재 증빙서류(필요시)

- (신청방법) E-mail, Fax, 직접 방문

- E-mail : fta\_other\_application@customs.gov.hk
- Fax : {852}3152-0183

- 신청비용

- 모든 '비가공증명서' 신청은 아래표 종류 D 항목의 서류 심사비용을 납부
  - \* 홍콩에서 하역하거나 재포장을 필요로 하는 화물의 경우, 서로 다른 운송방식 및 처리방법에 따라 종류별로 아래표 A에서 C 항목의 부가비용이 추가됨

| 종류 | 운송방식                  | 처리방법                | 비용(HK\$) |
|----|-----------------------|---------------------|----------|
| A  | 항공 / 육로 / 해운으로 수입한 화물 | 화물통합[적출입]이 필요한 화물   | 625      |
| B  | 항공으로 수입한 화물           | 화물통합[재포장 혹은 기타]이 필요 | 910      |
| C  | 육로 / 해운으로 수입한 화물      | 화물통합[재포장 혹은 기타]이 필요 | 1,470    |
| D  | 항공 / 육로 / 해운으로 수입한 화물 | 서류 심사               | 155      |

※ 홍콩해관은 운송방식 및 필요한 처리방법에 따라 비용을 계산한 후 신청인에게 납부서를 발급하고 신청인이 납부를 완료하고 나면, 서류 혹은 현장 확인 후 발급

- 비가공증명서 교부(직접교부)

1) 해관 '환적화물' 사무소 新界葵涌貨櫃碼頭南路63號 海關大樓7樓

- 근무시간 :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공휴일도 동일, 일요일 휴무)

- 전화번호 : [852] 3152 0233

2) 해관 항공화물터미널 컨트롤센터 赤鱲角香港國際機場 超級一號貨運站1樓

- 근무시간 : 24시간

- 전화번호 : [852] 2116 2024



## 중국 → 홍콩 경유화물에 대한 재화청단(清單) 인정여부

- ▶ 다음의 조건하에서 중국에서 홍콩까지의 운송경로를 입증하는 재화청단과 홍콩에서 한국까지 운송경로를 입증하는 운송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직접운송으로 간주될 수 있음
  - 해당 화물의 컨테이너 번호가 변경되지 않고,
  - 컨테이너 Seal No.가 변경·파손되지 않고,
  - 통상 환적에 소요되는 기간(7일) 내에 환적
- ※ 재화청단(清單)이란 중국 → 홍콩 내륙운송시 해당차량에 대해 발급하는 서류(적하목록)로 중국 지방교통국 및 세관에 사전등록된 차량에 한해 운송을 허용함

### 관련규정

- 한-중 FTA 제3.14조(직접운송) 제3항
  - 가. 통과 또는 환적의 경우에는 항공화물운송장, 선하증권, 또는 수출 당사국에서부터 수입 당사국까지의 전체 운송경로가 포함된 복합운송이나 합병운송서류



## 수입신고시 원산지증명서 원본 제출 여부

- ▶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수입신고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으나
  -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는 때에 원산지증명서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세관장이 요구하면 이를 제출해야 함
  - ※ 세관장이 특별한 사유로 원본을 요구하지 않는 한 원산지증명서 사본 제출 스탬프를 날인하여 사본 제출 가능
- ▶ 참고로, 중국의 경우에는 수입신고시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제출해야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음

### 관련 규정

- 한-중 FTA 제3.17조(특혜관세대우의 신청) 제1항 “다”호
- FTA관세특례법 제10조(협정관세의 적용신청 등) 제1항
- FTA관세특례고시 제30조(원산지증빙서류 제출요구) 제3항



## 원산지증명서의 원산지결정기준 표기

해당상품의 원산지결정기준이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임에도 원산지재료로만 생산(WP)으로 표기할 수 있는지 여부

- ▶ 원산지증명서에 상품의 원산지결정기준 표기는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는 것이 원칙임
- ▶ 다만, 해당상품의 원산지결정기준이「부속서 3-가」에서 세번변경기준 등으로 정하고 있더라도 해당상품이 원산지재료로만 생산된 경우에는 “WP”로 표기하는 것도 인정해주고 있음
  - ※ 참고로,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되지 않는 경우에는 통관과정 또는 검증을 통하여 세관의 확인절차 등이 수반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할 것을 권고함

### 관련규정

-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작성요령

| 원산지 기준                                                                                                        | 표기방법 |
|---------------------------------------------------------------------------------------------------------------|------|
| 해당 상품이 제3.4조(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에 규정되고 정의되거나 또는 부속서 3-가(품목별 원산지 규정)에서 요구되는 바와 같이, 전적으로 당사국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경우 | WO   |
| 해당 상품이 그 원산지가 제3조(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이행 절차)에 부합하는 재료로만 전적으로 당사국에서 생산되는 경우                                           | WP   |
| 해당 상품이 세번변경요건, 역내가치포함비율요건, 공정 요건 또는 부속서 3-가(품목별 원산지 규정)에 명시된 그 밖의 요건에 부합하는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하여 당사국에서 생산되는 경우        | PSR  |
| 해당 상품이 제3.3조(특정상품의 취급)의 적용을 받는 경우                                                                             | OP   |



##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받을 경우 수입신고시 의사표시 여부

### ▶ 협정관세 적용은 수입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운영

### ▶ 우리나라의 경우

- 수입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협정관세 적용신청서와 유효한 원산지증명서(원본) 등을 첨부하여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음

※ 수입신고시 협정관세 사후적용 의사표시 필요 없음

### ▶ 중국의 경우

-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 수입신고시에 협정관세 사후적용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않음

### 관련 규정

- 한-중 FTA 제3.18조(수입 이후 특혜관세대우)
- FTA관세특례법 제10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 한-중 FTA 수출입화물 원산지관리판법(해관총서령 2015년 제229호 2015-12-19) 제18조  
원산지를 한국으로 신고한 수입화물은, 수하인 또는 그 대리인이 신고 수입 시에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반드시 과세하기 전에 해당 수입화물이 한국 원산지 자격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해관에 추가신고(양식은 첨부문서 2를 참고)를 진행해야 한다. - 종략 - 또한 본 조항 규정에 따라 해당 수입화물이 한국 원산지 자격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추가 신고를 진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수입 신고의 화물은 협정세율을 적용하지 않음.



## 한-중 FTA 발효일 전에 공급한 물품에 대한 원산지확인서 발급 여부

- ▶ 한-중 FTA 협정은 협정이 발효되는 날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함
- ▶ 따라서, 한-중 FTA 적용을 위해 원산지확인서를 발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 협정이 발효되는 날부터 해당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하여 발급하여야 함
- ▶ 다만, 협정발효일 이전에 공급한 물품이더라도 협정발효일에 소급하여 원산지를 확인하여 원산지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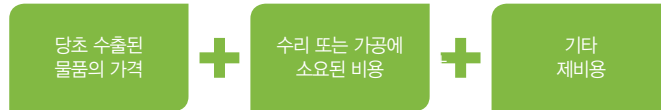
### 관련규정

- FTA관세특례법시행규칙 제6조의3(원산지확인서)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 또는 최종물품을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자가 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재료 또는 최종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하여 작성하여 수출자 등에게 제공
- FTA관세특례법시행규칙 부칙 제1조(시행일)



## 임가공물품에 대한 한-중 FTA 협정관세 적용 여부

### ▶ 수리 또는 가공 후 재수입되는 물품의 과세가격



### ▶ 따라서 재수입되는 물품이 원산지를 충족하고 협정관세 적용 요건을 구비한 경우 수리(가공)비용에 대해서도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함

#### 관련 규정

-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37조(수리 또는 가공한 후 재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  
법 제101조 제1항제2호에 따른 수리 또는 가공한 후 재수입하는 물품(외국에서 검사, 전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과세가격은 수리 또는 가공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의 가격과 다음 각 호의 비용이 포함된다.



## 1개의 B/L로 반입된 물품을 수입신고 란별로 한-중 FTA와 APTA 협정세율 적용가능 여부

### ▶ 수입신고시 다수의 품목을 신고하는 경우

- 품목번호 · 품명 · 상표 · 원산지가 다른 경우 각 란을 달리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 적용세율에 대해서는 관세율을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함

### ▶ 따라서, 1개의 B/L로 반입된 물품을 한-중 FTA와 APTA 협정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 수입신고시 란을 달리하여 해당 세율을 구분하여 기재해야 함
- ※ APTA 협정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수입신고시 원산지증명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함

### 관련규정

- 관세법시행령 제236조제1항(원산지증명서의 제출 등)  
법 · 조약 · 협정 등에 의하여 다른 국가의 생산물품에 적용되는 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로서 원산지확인이 필요하다고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자는 해당물품의 수입신고시에 그 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fta.customs.go.kr  
ftapass.or.kr



관세청  
KOREA CUSTOMS SERVICE